

郡政質問答辯書

질문일시 : 2005. 9. 8.

질문의원 : 정 종 기 의원

질문내용

☞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관련하여

-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사지마을 주민들은 건축을 할 때 20%의 건폐율을 적용 받으므로 주거,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?

答辯者 : 都市建築課長 金星圭

郡政質問 答辯內容

□ 질문요지

- 상수도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사지마을 주민들은 건축을 할때 20%의 건폐율을 적용 받으므로 주거,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?

□ 답변요지

- ① 사지마을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면서 1981년 1월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고 있는 마을로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, 거창군계획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을 20%이하로 규정하고 있음.
- ② 사지마을은 현재 43가구에 11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, 총건축물은 84동으로 이중 주거용이 43동, 창고, 축사, 화장실 등 기타 건축물이 41동으로 자연 집단취락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나,
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사지마을은 농지법 제34조의 건축물(건폐율 50%적용) 적용에서 배제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임.
- ③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관리계획상 용도 지역 및 시설경계를 기준으로 사지마을 일원 15,100m²(4,568평)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군관리 계획 재정비 계획(안)에 반영조치 중에 있음.

郡政質問 答辯內容

□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.

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

상수도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사지마을 주민들은 건축을 할 때 20%의 건폐율을 적용 받으므로 주거,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□ 사지마을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면서 1981년 1월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고 있는 마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, 거창군계획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을 20%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사지마을은 현재 43가구에 11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, 총건축물은 84동으로 이중 주거용이 43동, 창고, 축사, 화장실 등 기타 건축물이 41동으로 자연 집단취락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나,

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사지마을은 농지법 제34조의 건축물(건폐율 50%적용) 적용에서 배제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및 시설경계를 기준으로 사지마을 일원 15,100m²(4,568평)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(안)에 반영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정종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